

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2. 7. 21(목) 10:00

제23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소관)



**행정재경위원회**  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95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. 7. 13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7. 13.

## 2. 제안이유

구민중심의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보좌기능의 전문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함(안 별표 3)
  - 일반직 계 : 1,180명 → 1,177명(감 3)
    - 6급 이하 : 1,116명 → 1,113명(집행기관 감 3)
  - 별정직 계 : 3명 → 6명(증 3)
    - 6급 상당 이하 : 2명 → 5명(집행기관 증 3)

현 행					구분	개 정 안					
총 계	집행기관			의회 사무기구		총 계	집행기관			의회 사무기구	증감
	본청	보조 소	동				본청	보조 소	동		
1,184	1,155			29	총 계	1,184	1,155			29	
1	1				정 무 직	1	1				
<b>1,180</b>	<b>1,153</b>			27	일반직 계	<b>1,177</b>	<b>1,150</b>			27	<b>감3</b>
1	1				3급	1	1				
8	6	1		1	4급	8	6	1		1	
53	32	9	10	2	5급	53	32	9	10	2	
<b>1,116</b>	<b>1,092</b>			24	6급 이하	<b>1,113</b>	<b>1,089</b>			24	<b>감3</b>
2	2				전문경력관	2	2				
<b>3</b>	<b>1</b>			2	별정직 계	<b>6</b>	<b>4</b>			2	<b>증3</b>
1	1				5급 상당	1	1				
<b>2</b>	<b>-</b>			2	6급 상당 이하	<b>5</b>	<b>3</b>			2	<b>증3</b>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<u>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</u> <u>정원 조례</u>						<u>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</u> <u>정원 조례</u>					
[별표 3]						[별표 3]					
<u>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</u> (제4조 관련)						<u>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</u> (제4조 관련)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집행기관			의회 사무 기구	기관별 직급별	총계	집행기관			의회 사무 기구
		본청	보건소	동				본청	보건소	동	
총 계	1,184	1,155			29	총 계	1,184	1,155			29
정 무 직	1	1				정 무 직	1	1			
일반직 계	1,180	1,153			27	일반직 계	1,177	1,150			27
3급	1	1				3급	1	1			
4급	8	6	1		1	4급	8	6	1		1
5급	53	32	9	10	2	5급	53	32	9	10	2
6급 이하	1,116	1,092			24	6급 이하	1,113	1,089			24
전문경력관	2	2				전문경력관	2	2			
별정직 계	3	1			2	별정직 계	6	4			2
5급 상당	1	1				5급 상당	1	1			
6급 상당 이하	2	-			2	6급 상당 이하	5	3			2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구민중심의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보좌기능의 전문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함.
- 총 정원은 1,184명으로 변동이 없으며, 집행기관의 일반직 6급 이하 3명 감원,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3명 증원함.

— <별정직 증원내역 : 3명> —

- 직급별 대상안 : 6급 상당 1명, 7급 상당 1명, 8급 상당 1명
- 소 속 : 구청장 비서실
- 주요 직무 : 일정관리, 수행업무, 보고사항 조율 등

※ 정원책정기준 부합여부 : 적합(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제2항 관련)

구분	계	일 반 직	별정·정무직
책정 기준	100%	99%	1% 이내
개정 후 정원	1,184명	1,177명	7명
개정 후 비율	적합	99.41%	0.59%

- 다만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2호에서 별정직공무원은 “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”으로 규정하고 있고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5조제1항에서는 “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.”고

되어 있으며, 제2항에서는 “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,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.”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, 금번 증원하고자 하는 3명의 별정직공무원 정원이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하기 곤란한 직무인지, 직무의 성질과 양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원을 증원하였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.

- 붙임 1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- 2. 관련 법령 1부.

【붙임 1】

**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**

직급별 기관별	총계	집행기관			의 회 사무기구
		본청	보건소	동	
총 계	1,184	1,155			29
정 무 직	1	1			
일반직 계	1,177	1,150			27
3급	1	1			
4급	8	6	1		1
5급	53	32	9	10	2
6급 이하 계	1,113	1,089			24
전문경력관 계	2	2			
별정직 계	6	4			2
5급 상당	1	1			
6급 상당 이하	5	3			2

## 관 계 법 령

### 「지방자치법」

**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###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**제30조(정원의 규정)**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2020.3.10.>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 <2020.3.10.>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"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7. 3., 2013. 12. 4.>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12. 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16.>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 현행조례

##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원의 총수)**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,184명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: 1,155명
2.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29명

**제3조(정원채정기준)** ① 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**제4조(직급별 정원)**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5조(직렬별 정원)**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)은 규칙으로 정한다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으로 직렬직급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

### [별표 1]

##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구 분	일반직	별정직·정무직
비 율	99% 이상	1% 이내

비 고

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·지도직,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.
2.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

[별표 2]

**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**

1. 일반직 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
비 율	1%이내	6%이내	21%이내	31%이내	30%이내	10%이상	1%이내

2. 별정직 공무원

구 분	5급 상당 이상	6급 상당	7급 상당 이하
비 율	35% 이내	35% 이내	30% 이상

비 고

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**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(제4조 관련)**

직급별 기관별	총계	집행기관			의 회 사무기구
		본청	보건소	동	
총 계	1,184	1,155			29
정 무 직	1	1			
일반직 계	1,180	1,153			27
3급	1	1			
4급	8	6	1		1
5급	53	32	9	10	2
6급 이하 계	1,116	1,092			24
전문경력관 계	2	2			
별정직 계	3	1			2
5급 상당	1	1			
6급 상당 이하	2				2

【붙임 3】

# 서울시 자치구별 정원 현황

(기준 : 2022. 5월 / 단위 : 명, 백만원, km<sup>2</sup>, %, 개)

구번	자치구	공무원1인당 주민수		공무원		주민등록 인구		예산		면적		행정동	
		인원 (명)	순위	정원 (명)	순위	인구 (명)	순위	2022년 (백만원)	순위	면적 (km <sup>2</sup> )	순위	동수	순위
평균		252명		1,478명		380,019		746,149		24.21km <sup>2</sup>		17동	
1	금천	195.2	22	1,184	25	231,150	22	622,602	22	13.0	24	10	25
2	종로	112.0	24	1,286	23	144,005	24	490,834	25	23.9	11	17	11
3	중구	97.7	25	1,250	24	122,087	25	573,364	24	10.0	25	15	18
4	용산	165.2	23	1,344	21	222,009	23	575,898	23	21.9	14	16	13
5	성동	211.1	21	1,348	20	284,573	21	659,831	21	16.9	21	17	11
6	광진	237.5	16	1,433	15	340,396	16	732,324	19	17.1	20	15	18
7	동대문	237.2	18	1,423	16	337,570	17	736,000	18	14.2	23	14	21
8	종랑	261.2	12	1,489	11	388,941	12	905,064	7	18.5	17	16	13
9	성북	273.2	10	1,586	6	433,331	9	882,413	8	24.6	9	20	4
10	강북	216.0	20	1,375	19	296,942	20	827,510	12	23.6	13	13	24
11	도봉	237.4	17	1,329	22	315,522	18	739,201	17	20.7	15	14	21
12	노원	310.6	5	1,641	4	509,658	4	1,144,501	3	35.4	4	19	6
13	은평	310.7	4	1,523	9	473,131	6	1,011,000	5	29.7	6	16	13
14	서대문	216.7	19	1,411	17	305,721	19	690,838	20	17.6	18	14	21
15	마포	253.9	14	1,448	14	367,613	15	763,614	15	23.9	12	16	13
16	양천	303.0	6	1,471	13	445,662	8	853,734	10	17.4	19	18	8
17	강서	328.5	2	1,743	3	572,648	2	1,156,996	2	41.4	2	20	4
18	구로	262.8	11	1,505	10	395,555	11	836,420	11	20.1	16	16	13
19	영등포	252.8	15	1,489	11	376,465	14	784,852	14	24.6	10	18	8
20	동작	277.3	9	1,392	18	385,982	13	739,477	16	16.4	22	15	18
21	관악	311.2	3	1,563	8	486,361	5	905,655	6	29.6	7	21	3
22	서초	254.6	13	1,606	5	408,918	10	793,862	13	47.0	1	18	8
23	강남	300.6	7	1,770	1	532,049	3	1,200,115	1	39.5	3	22	2
24	송파	375.0	1	1,768	2	662,963	1	1,064,155	4	33.9	5	27	1
25	강동	294.9	8	1,564	7	461,228	7	872,097	9	24.6	8	19	6

※ 자료출처 : 공무원 정원 - 서울시 「인사관리시스템」 / 인구 - 행정안전부 「주민등록인구현황」, 예산 - 자치구별 홈페이지 / 면적 및 행정동수 - 서울시 홈페이지